

안전복 착용





고용노동부



안전복 착용

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○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

○ 단조작업장 입구